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7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최호정,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박상혁, 박석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서호연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중복, 이경숙, 이병윤, 이상욱, 이종배, 이종태, 이효원, 이희원, 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채수지, 최민규, 허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57명)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,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 함(안 제5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6조(인사청문회)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.

1.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
3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

②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6조(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) ① <u>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. 다만,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“산하기관장”이라 함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.</p> <p>③ 의장은 제1항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56조(인사청문회) ①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3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기관장 <p>②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</p>